

「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」(교육부예규 제88호) [별표 1]

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

1. 교원경력(환산율 5~10할 이내)

경력구분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가. 국·공립학교 교원(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) 근무 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<p>※ 교원임용기간 중 교육행정기관, 교육연구 연수기관에 발령·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, 교원(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(10할 이내) <p>※ 단,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(중등 교원자격증 → 초등학교 근무)의 경우에는 8할 이내를 인정한다.</p>
나. 사립학교 교원(기간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) 근무 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, -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교원 (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 (10할 이내) -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되지 않은 교원 (기간제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)으로 근무한 경력 (5할 이내) <p>※ 단,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(중등 교원자격증 → 초등학교 근무)의 경우에는 8할 이내를 인정한다.</p>
다.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근무 경력(10할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
라. 한국학교 근무 경력 (10할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,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
마. 어린이집 근무 경력 (10할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(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)을 갖추고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

2.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(환산율 8~10할)

경력구분	인정대상경력
가.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 경력(10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공무원보수규정」 [별표 22]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목에 규정된 경력
나. 고용직공무원 경력(8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공무원보수규정」 [별표 22]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나목에 규정된 경력